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 2차 의회 운영 위원회 의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35호)

2024. 8.

의회 운영 전문위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135
----------	------

2024년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자) 김충식,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현,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최원석
- (발의일) 2024년 8월 16일
- (회부일) 2024년 8월 19일
- (상정일자) 2024년 8월 30일
- (의결일자) 2024년 8월 30일
 -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 (의결결과) 원안가결

II. 제안이유 요지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건의안·결의안의 처리 현황에 대한 보고 체계가 발의 의원과 소관 상임위의 요구로 운영되면서, 결의의 주체인 지방의회와 다른 의원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장, 교육감 등에게 채택된 건의안·결의안의 처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III. 검토의견

- 현행 조례는 건의안·결의안의 처리 현황에 대한 보고 체계를 ‘발의 의원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의한 보고’로 하고 있어, 발의 의원 및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은 처리현황 보고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본 개정안은 “건의안·결의안”의 처리 현황 보고 체계를 ‘본회의¹⁾ 또는 상임위원회’로 변경하여 보고 요청 주체의 범위를 개선하고 보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것임.
- 이는 지방의회가 채택한 결의안 등이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의결된 의안에 해당함으로 그 처리결과 또한 지방의회 (의장)나 상임위원회(위원장)에 보고 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안²⁾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1) 자치단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 지방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결정의 단계

2)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권고안[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1158(2024.3.7.)]

- 또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와 본회의 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의 회의 현실과 같은 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 따른 처리상황 보고를 받을 권한이 ‘의원이 아닌 의회 또는 위원회’에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조례 개정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IV. 토 론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 소수의견 : 없음

VII. 기타사항 : 없음

【첨부자료】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개정 권고,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1158(2024. 3. 7.)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발의한 의원 또는 소관”을 “본회의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불임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후 관리 및 보고) ① (생 략) ② 시장과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을 <u>발의한 의원 또는 소관 상임</u>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 관리 및 보고) ① (현행 과 같음) ② ----- --- <u>본회의 또는</u> ----- ----- -----.

[불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며 동 조례 개정으로는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충식

[불임3]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등과 제도를 정비·개선할 책무를 진다.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 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법령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개정 권고

1. 평소 지방의회 관련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일부 지방의회에서 **건의안·결의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발의한 의원 개인에게 (30일 이내) 보고토록 하는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나, 개별 보고 시 '결의의 주체인 지방의회' 내 다른 의원 배제 가능성, 보고 방식의 불분명 등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3. 건의안·결의안 보고체계 명확화 및 유사 조례 제정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부 의견을 전하오니, 조례 제·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서 서류제출이나 처리상황 보고를 받을 권한은 '의원'이 아닌 '의회·위원회'에 있으며,

[개정 예시] 소관부서의 장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된 건의안 등과 관련하여 의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위원장)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건의안·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결(채택)된 의안'이므로, 그 처리 결과도 **지방의회(의장)나 상임위원회(위원장)를 대상으로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보고하여야 하고 의회·위원회(의장·위원장)를 통하여 관계 의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조항에 대해 개정을 권고함

⇒ (현행1) 30일 이내 그 처리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2) 발의한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에서는 본 내용을 소관 시군구에 전파 요망. 끝.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장,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장,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사무처장,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장,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의회사무처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주무관 김서연 행정사무관 김인경 선거의뢰자치 전결 2024. 3. 7.

협조자

시행 서기의회자치법규편-1158 (2024. 3. 7.) 전수 의정담당관-1704 (2024. 3. 7.)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6호 / www.npis.go.kr

전화번호 044-205-3375 팩스번호 044-204-8954 / ksy2024@korea.kr / 대국민 골개